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1. 출제영역분석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2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3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1	지방자치의 재정	4
지방자치의 운영	7	정부 간 관계	3

2.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17	기출변형 문제	3	신유형 문제	-
-------	----	---------	---	--------	---

3.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짜 맞추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9	-	1	3	-	-	7

01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7%, 특별조정교부금은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함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 ④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인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다.

【해설】 ① [O] 지방재정법 제29조의 3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③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X]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X] 특별조정교부금은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조정교부금과 다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일반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0%, 특별조정교부금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비율은 「지방재정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획일적 X).
- ④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특별조정교부금은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76, 부속법령집 p.115



0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의 전국적 협의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해 분쟁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6항

지방자치법 제16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X]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동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X]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동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X]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동법 제148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올바른 지문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

③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해 분쟁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218, 226~229 / 부속법령집 p.99~104



03 외국의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의 도쿄도는 시·정·촌과 특별구를 두고 있다.
- ②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metropolitan district)를 통합시(unitary authority)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③ 프랑스의 자치계층은 레지옹(region), 데파르트망(département), 꼬뮌(commune)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독일의 경우 베를린 등 3개 도시주(city-state)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단층제와 중층제가 혼용되고 있다.

【해설】 ② [X] 영국의 경우 1996년 이후 비메트로폴리탄 카운티에서 카운티를 없애는 대신 디스트릭트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층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방정부가 통합시(unitary authority)이다.

▶ 올바른 지문

②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비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non-metropolitan county)를 통합시(unitary authority)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44~47



04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했다.
- ② 주민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고 있다.
- ③ 위법한 재무행위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일반사무행위도 포함한다.
-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③ [X]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행위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포괄적인 일반사무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재무행위분야에 한정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43 / 부속법령집 p.23, 24



05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위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된다.
 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의사와 책임 아래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다.
 ㄷ. 2003년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ㄹ.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권은 없지만 법인격을 갖는다.
 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능중복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① ㄱ, ㄷ, ㄹ, ㅁ
- ② ㄴ, ㄹ, ㅁ
- ③ ㄱ, ㄷ
- ④ ㄱ, ㄷ, ㄹ

[해설] ㄱ [X]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관여하지 못한다.
 ㄴ [O] 자치사무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지방적 공공사무이다.
 ㄷ [X] 2003년에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X]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기관으로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다.
 ㅁ [O]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의 기능 중복으로 이중행정, 이중감독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ㄱ.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급자치단체가 위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2003년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다.
 ㄹ.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치권과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29, 70, 212~214 ▶ ④

0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조례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① [X]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③, ④ [O]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올바른 지문

①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04 / 부속법령집 p.68, 69



| 법령 문제 |

07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강서구의 관할구역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 ① 서울특별시 규칙 개정
- ②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 ③ 대통령령 개정
- ④ 「지방자치법」개정

【해설】 ③ [O] 기초자치단체인 양천구와 강서구의 관할구역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mmary |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의 조정절차

구분	형식	대상 및 절차
자치구역 (광역 & 기초 자치단체)	법률	명칭변경, 구역변경, 폐치분합 (지방의회 의견청취 必要, 단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 제외)
	대통령령	한자명칭변경, 경계변경
행정구역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	조례	폐치분합(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명칭변경, 구역변경(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05 / 부속법령집 p.70, 71



08 「지방자치법」상 서울특별시의 19세 이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서울특별시장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ㄴ. 서울특별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
- ㄷ.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서울특별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O]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ㄷ [O]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동법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ㄹ [O]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동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64, 142, 145 / 부속법령집 p.20~29



09 <보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 ㄱ~ㄷ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ㄱ)(으)로 정한다.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ㄴ)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ㄷ)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ㄱ	ㄴ	ㄷ
①	조례	행정안전부령	100분의 50
②	지방재정법	대통령령	100분의 10
③	조례	대통령령	100분의 50
④	조례	행정안전부령	100분의 10

【해설】 ③ [X]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단서조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ㄱ, 조례) 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ㄷ,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73 / 부속법령집 p.92



10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한국전쟁 이전에 제정되었다.
- ②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 ③ 1956년 서울특별시장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선출되었다.
- ④ 제4공화국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였다.

[해설] ③ [×]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직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직을 유지하였다. 최초의 서울특별시장 주민직선은 1960년에 이루어졌다.

▶ 올바른 지문

- ③ 1960년 서울특별시장은 주민 직선으로 처음 선출되었다.

summary | 지방자치의 성립

	관련 법률	특별시장·도지사	시·읍·면장	지방의원	지방선거
제1공화국	지방자치법 제정(1949)	임명제 (대통령 임명)	간선제 (지방의회선출)	직선제 (명예직)	제1차 지방선거 (1952. 4)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 (1956)	임명제	직선제	직선제	제2차 지방선거 (1956. 2) * 서울시의회 최초 구성
	지방자치법 제4차 개정 (1958)	임명제	임명제	직선제	
제2공화국	지방자치법 제5차 개정 (1960)	직선제 * 서울시장 최초 직선	직선제	직선제	제3차 지방선거 (1960. 12) * 최초로 모든 지방 정부의 집행·의결 기관 선거에 의해 구성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25~31



1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 ① 공익상 필요한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④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X]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동법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O] 지방자치법 제27조

동법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O] 지방자치법 제47조

동법 제47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64, 68, 99, 112 / 부속법령집 p.30, 50, 93, 94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 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O] 지방자치법 제26조

동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X]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조례(법률 X)로 정한다.

동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 [O] 지방자치법 제109조

동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올바른 지문

-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66, 98, 103 / 부속법령집 p.29, 30, 61, 67, 83

▶ ③

| 말 바꾸기 + 법령 문제 |

13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회위원회에서 협의·조정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1차로 환경부장관의, 2차로 서울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O] 지방자치법 제168조

동법 제168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O] 지방자치법 제171조

동법 제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④ [X]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동법 제167조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올바른 지문

- ④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1차로 서울특별시장의, 2차로 환경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207, 218~220 / 부속법령집 p.109

▶ ④

14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반드시 주민 직선으로 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 [O], ④ [X]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법률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헌법 제118조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X]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지 않으면 위헌이다.

동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③ [X]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법령 X)로 정한다.

동법 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올바른 지문

- ②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지 않으면 위헌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④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법률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48, 92 / 부속법령 p.5, 43



15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시도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①, ③ [O]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 ② [X]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동법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O]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올바른 지문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1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는 가진다.
- ③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 자격이 주어진다.

【해설】 ① [O]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② [O] 지방자치법 제13조

동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X] 국민인(모든 X)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올바른 지문

③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33~136 / 부속법령 p.15, 16, 18



17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O]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O] 지방자치법 제123조

동법 제123조 【국가시책의 구현】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④ [X]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동법 제126조 【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 ④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54, 155 / 부속법령 p.77, 83

▶ ④

| 개념 |

18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 ②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자립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③ 지방공공재 공급의 분권화가 효율적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 ④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해설】 ① [×], ②, ③, ④ [○]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은 지방공공재의 경우 발로 하는 투표에 의해서 선호표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구성된 분권화체제하에서는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기본적인 가정은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자립적임 등이다.

▶ 올바른 지문

- ①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이론이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53

▶ ①

19 우리나라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 ② 소규모 지방의회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
- ④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해설】 ① [O]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② [O] 우리나라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지방의회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었다.

동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O] 지방자치법 제90조

동법 제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X]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동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올바른 지문

④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97, 98 / 부속법령 p.52, 60, 61

▶ ④

2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가진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O]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X] 2006년에 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확립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조례 및 규칙의 제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예고까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④ [O] 지방자치법 제124조

동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갖지 못한다.

【참고】 2018 compass 지방자치론 p.185, 227 / 부속법령 p.77, 104

▶ ③